

제 1372 호  
1987. 8.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공보관  
 편집인 : 공보관 김철성  
 인쇄 : 서울특별시 출판물간접  
 전화 : 736-3337

< 보 관 응 >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고시, 공고문등의 경어사용 .....	3
물품관리 전환소요조치 .....	4
◎ 조 례	
제 2193 호 : 서울특별시청영동포병원위탁운영계약안조례 .....	5
제 2194 호 :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	6
◎ 고 시	
제 573 호 : 사료성분등록 .....	13

(이런저속)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와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582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지적승인 .....	13
제 584 호 : 사료성분등록 .....	14
◎ 구 고 시	
도봉구제 359 호 : 하천정용 ( 도시가스판매설 ) 허가 .....	14
◎ 공 고	
제 503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면허취소 .....	15
제 509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공람 .....	15
◎ 사 령	

**공 문 시 령**

(관인정탁)

서울특별시

법무 02101-214

(731-6156)

1987. 8. 20.

수신처 : 수신처 참조

제목 : 고시, 공고문등의 경어 사용

1.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이고 명백적인 용어, 낱은투의 한자용어 및 문구등은 가당히 이를 시정하여 국어순화와 시민권의 위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2. 각 부서에서 작성 시행하는 모든 고시문서, 공고문서등도 이에 발맞추어 종래의 비민주적, 권료주의적 용어나 문구를 피하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토록 할것. (예시: "동행시행령"은 "같은엄시행령"으로 "고시한다"는 "고시합니다"로 "보인다"는 "보입니다"로 "바람"은 "바랍니다"로 표기)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53조의 규정이 따라 구청기체감사과장 또는 사업소의 기획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고시, 공고문안을 사전심사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사항에 착안하여 심사여 절차를 기할 것. 끝.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권철

수신처 : 서관 01, 02, 서과 01-79, 서사 01-57, 서보 01-17, 서택 01-17, 서서 01-11.

(판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조사 01750-600 (731 - 6196) 1987.8.20.

수 신 : 수신처 참조

계 목 : 물품관리 전환소요 조회

1. 조사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 전환소요를 조회하여 '87.9.5.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람.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것으로 처리하겠음.

가. 관리전환대상 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수량	취득년월일	장부가액	상 대
7730-003-2240	금성프로젝션TV	45"	1 대	'84.12.27	2,475,000	중고품

서 울 특 별 시 장

조사담당관 전전

수신처 : 서울특별시 산하 전기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영동포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0

서울특별시시장 영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93 호

서울특별시립영동포병원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 ( 목적 ) 이 조례는 시민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시민의 진료비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특별시립영동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운영의 위탁 ) ①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병원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병원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서 의한 병원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 ( 운영위원회 ) ①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병원장
2.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위원
3. 수탁자가 위촉하는 3인이내의 위원

④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조 ( 입원 및 퇴원 ) 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 ( 공유재산의 사용등 )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관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 수가 ) 진료수가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 의한다.

제 7 조 ( 수탁자의 의무 ) ①수탁자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 진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병원시설과 무상으로 사

용하는 공유재산물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 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시설 준공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독) ①시장은 효율적인 병원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 7 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8.20

서울특별시장 임보현(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194 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중 "5급공무원 및 연구관을"을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및 의사"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 1 항의 임용이라함은 신규임용, 징직, 휴·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 28 조 제 1 항 제 1 호중 "원정"을 "면역원"으로 "수위"를 "방호원"으로 하며 제 2 호중 "50세"를 "53세"로 하고 제 3 호중 "20세"를 "23세"로 하고 제 3 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본 별지와 같이 하교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987.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은 별표 6 과 같이 원행 직명

(별표 1) 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과 직명표

간의 직명은 각각 개정직명란의 직명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 6"의 원행직명란의 직에 제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은 각각 이 조례 시행일어 개정직명란의 직에 임용될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개별조치에 규정된 고용직장원은 "별표 6"의 의한 개정된 직명의 정원으로 본다.

중별및직명 직무구분	1	중	2	중	기능무고용직
진 속	목공원				
용 실	교환원, 통신보조원				
진 기	전기보조원				
기 계	운전원, 기지보조원 사진실		건설보조원		
업 업			원예원		
보 직 위 색	방역원				
업 무 보 조	타자원, 행정보조원		전달원, 조사원, 교도원, 안내원, 배표원, 관리원, 보조		
감 시	방호원		감시원, 교통순시원		
기 다	사무원, 지도원 수도보조원 건설무안내원		감무원, 재봉원 이·미용원		사 환

(별표 2)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의 구분

구분	직명	시험구분	시험실시기관
단순노무 종사직군	방호원, 감시원, 수도보조원, 전년육안 내원, 장무원, 사환	특별임용	임용권자
자격·가 능을 요 하는 직 군	복공원, 교환원, 통신원, 운전원, 전기 보조원, 기계보조원, 사진원, 전선보조 원, 원예원, 방역원, 타자원, 교도원, 관리원, 보도사육원, 재봉원, 이·미용 원, 기도원,	특별임용	임용권자
행정보조 직군	행정보조원, 전달원, 조사원, 안색원, 대표원, 교통통신원	공개경쟁임용 또는특별임용	시장 또는 임용권자

(별표 4) 고용직공무원 특별임용자격 기준표

직무구분	직명	분야	자격구분
건축	복공원		1. 당해분야 경력 1년이상인 자
통신	교환원		1. 전화교환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통신보조원		1. 통신기능사보이상 자격증소지자 2.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통신과 졸업자 3. 당해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전기	전기보조원		1. 전기 및 통신기능사보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전기과, 통신과 및 전자과 졸업자 3. 국·공립직업훈련원 전기과, 통신과 및 전자과 졸업자 4. 당해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자
기계	운전원		1. 당해 운전면허소지자
	기계보조원	병·난방 분야	1.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부구분	직명	분 야	자 격 구 분
			2.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열관리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4. 공업고등학교이상 기계과 졸업자 5.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자동차분야	1. 자동차검사(정리)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2. 공업고등학교이상 기계과, 자동차과 졸업자 3. 당해분야 경력 3년이상인 자
		기타분야	1. 각종기계(장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2. 공업고등학교이상 기계과 졸업자 3. 당해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사 진 원	1. 당해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건설보조원	중기분야
		장부분야	1. 석학업음
임 일	원 역 원		1. 농업고등학교이상 졸업자 2.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인자
보건위생	방 역 원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업무보조	타 자 원		1. 한글 또는 영문타자 3급이상인 자
	행정보조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전 달 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조 사 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교 도 원	기술교도분야	1. 국가에서 인정하는 당해분야 자격 또는 면허증소지자

직무구분	직명	분야	자격구분
			2.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교도경력 2년이상인 자 3. 당해분야 교도경력이 5년이상인 자
		교정 분야	1. 전문대학이상의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학과, 보육학과, 간호 학과, 의약과출업자 2.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 3.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소지자
	안 내 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매 표 원	일반 분야	1. 중학교이상 졸업자
		유료도모분야	1. 중학교이상 졸업자
	관 리 원		1. 전문대학이상의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사업학과, 보육학과, 간호학과, 의학 과, 가정학과 졸업자 2.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소지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 자 4. 당해분야 경력 5년이상인 자
	보 모		1. 부모자격증소지자 2. 간호(보조)원 자격증소지자 3. 각급학교 교사자격증소지자 4.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에서 경력 1년이상인 자 5. 당해분야 경력 4년이상인 자
감 시	박 호 원		1. 제한없음
	감 시 원		1. 제한없음
	교통신시원		1.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기 타	사 육 원		1. 고등학교이상 추산과 졸업자 2. 당해 경력 3년이상인 자

직무구분	직 명	분 야	자 격 구 분
	지 도 원		1. 전문대학 체육학과이상 졸업자 2.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국가대표선수 출전경력이 있는 자
	수도보조원		1. 제한없음
	건설목안내원		1. 제한없음
	장 두 원		1. 제한없음
	재 봉 원		1.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이·미용원		1. 이·미용사 자격증소지자
	사 환		1. 제한없음

(별표 6)

고용직공무원직명개정

현 행 직 명	개 정 직 명
선 로 수 (1종)	건설목안내원 (1종)
목 공 (1종)	목 공 원 (1종)
분 신 원 (1종)	분 신보조원 (1종)
전 공 (1종)	전 기보조원 (1종)
기 계 공 (1종)	기 계보조원 (1종)
사 진 사 (1종)	사 진 원 (1종)
방 역 기사 (1종)	방 역 원 (1종)
수 위 (1종)	방 호 원 (1종)
조 절 수 (1종)	수 도보조원 (1종)
수 도 기사 (1종)	수 도보조원 (1종)
건설보조수 (2종)	건설보조원 (2종)
원 정 (2종)	원 예 원 (2종)
전 달 부 (2종)	전 달 원 (2종)
청 부 (2종)	장 두 원 (2종)
재 봉 사 (2종)	재 봉 원 (2종)
이·미용사 (2종)	이·미용원 (2종)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573 호

사료 성분 등록

사료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항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7. 8.20

서울특별시장

- 업제명: 국제통상기업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2동 170-10
- 대표자: 최순굴
-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사료 등록번호	사료명	용도	성분량 (%)					비고	
			조단백	조지방	조성유	조회분	칼슘		인
14-1	중립사료	중이용	34.0이상	1.50이상	3.0이하	9.0이하	2.0이상	1.20이상	수입사료
14-2	소원사료	키이용	34.0이상	1.20이상	3.0이하	10.0이하	2.0이상	1.50이상	·
14-3	박편사료	열대이용	45.0이상	3.0 이상	0이하	15.0이하	4.0이상	1.50 이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 5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정승인

1. 서울시 고시 제 283 호(87.4.29) 및 서울시 고시 제 305 호(87.5.6)로 변경 결정된 다음 도시계획

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8.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복원	연장	시	점	중	점	비	고
기정	중로	3	12	570	중동 97-7	오류동 265-2				
변경	·	3	12	450	중동 100-7	중동 98-6			일부해제 L=120 M	
기정	소로	2	8	400	중동 99-1	중동 90-18				
변경	·	2	8	220	·	· 97-19			일부해제 L=180 M	

구분	등급	류별	특원	연장	시 집	종	검	비	고
기점	소로	2	8	640	중동 230-12	중동 98-3			
변경	"	2	8	423	"	"		일부해제 L = 217 M	
기점	"	2	8	176	중동산 17-15	중동 210-13			
변경	"	2	8	146	"	"		일부해제 L = 30 M	

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584 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항의 규정  
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1987. 8.20

서울특별시장

1. 제조업체명: ㈜미원백합사료공장
2.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대림동 629-6
3. 대표자: 홍연석
4. 성분등록내역

등록번호	사료의명칭및용도	사 료 성 분 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13-1049	육용오리전거 (0-3 주) (펠릿 또는 가루)	20.0% 이상	2.5% 이상	6.0% 이하	8.0% 이하	0.7% 이상	0.5% 이상
13-1050	육용오리후기 (3-5 주) ( )	17.0% "	2.5% "	6.0% "	9.0% "	0.7% "	0.5% "
13-1051	오리종계육상 (8주-성란) ( )	15.0% "	2.5% "	8.0% "	9.0% "	0.7% "	0.5% "
13-1052	오리종계 ( )	16.0% "	2.5% "	7.0% "	15.0% "	2.5% "	0.5% "

구 고 시

◎ 도봉구 고시 제 359 호

하천질용 (도시가스관매설)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 4조 제 1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5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질용 허가하였기 이를 통보시행령 제 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1987. 8.20

도 봉 구 청 장

허가일자	위 치	정 용 목 적	허 가 내 용	수 허 가 자
87.8.17	수유동 605-207 (가오천지선)	도시가스판매업	1. 공작물내역 φ = 400 mm L = 4.6 m 2. 공사기간 87.8.17-87.10.31	도봉구, 상계동711 한인개발(주) 전 창 수
"	수유동 605-109 (가오천지선)	"	1. 공작물내역 φ = 400 mm L = 4.85 2. 공사기간 87.8.17-10.31	"
"	수유동 279-297 (대동천)	"	1. 공작물내역 φ = 400 mm L = 24 m 2. 공사기간 87.8.17-10.31	"
"	쌍문동 424-23 (구이원지선)	"	1. 공작물내역 φ = 400 mm L = 7.65 m 2. 공사기간 87.8.17-87.10.31	"
"	수유동 147 (가오천)	"	1. 공작물내역 φ = 400 mm L = 8.7 m 2. 공사기간 87.8.17-10.31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고</div>			외기 야래와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 를 취소하였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503 호			1987. 8. 20	
제 2 품 전기공사업면허취소공고			서울특별시 강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제 1 항 규정에				

아 래					
면허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취 소 사 유	
제 1275 호	현대기전주	영등포구 여의도동 53-1	이길원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면허기준 미달)	
<p>◎ 서울특별시공고제 509 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지제 328 호 ('87.5.12) 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흑석동 67 번지 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 수도) 실시계획 인가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람공고한다.</p> <p>○ 공람개요</p>		<p>2. 토지 및 건물(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 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공고 로 갈음한다.</p> <p>3. 관령동서는 동작구청 포목과의 전 설관리과에 비차하고 보지, 건물(지 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 람한다.</p> <p>가. 공람장소: 동작구청 포목과, 건설 관리과</p> <p>나. 공람기간: '87.8.21-'87.9.4 1987. 8.20 서울특별시장</p>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및 명칭	사업의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시설결정및 지적승인근거
흑석동 67-234 산 70-5	흑석동 67 번지 순환도로 개설 공사	도로개설 B=6, L=49 m 하수도 D=450%, L=55m	서울특 별시장	인가일 87.12.31	서울특별시 고시제 328 호 (87.5.12)
사당 4 동 227-8 산 32-4 사당 4 동 224-1 228-1	사당로-봉천동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15m L=408.5m B=6m L=178m 하수도 D=450-1200% L=580m	"	인가일 87.12.31	서울특별시 고시제 268 호 (78.6.5)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과수 및 공공채청일	사업결정 및 지적승인 근거
노량진 2동 292-1-297-5 간	노량진 2동 사무소 진입로외 1개소 도로 확장공사	도로확장 B=8m, L=70m 하수도 D=700mm, L=70m	서울특별시 특별시장	인가일 87.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0 호 (87.5.29)

1. 수용 또는 사용토지, 건물(지장물)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소유권 관리의 명세: 생략
2.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및 명: 생략
3.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사 령

◎ 1987년 8월 10일자

령제 257 호

성명	발명사항	원부시	직급
최전환	부산직할시 건축물 명화	상서구	지방행정서기보

◎ 1987년 8월 20일자

령제 258 호

성명	발명사항	원부시	직급
김홍석	한강관리사업소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우한수	"	구로구	지방토목기사보
이영근	"	동작구	지방기계기사보
장진영	"	김포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기사보
유영운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함집설	"	동대문구	지방화공기사보
전성우	"	김포수원지사무소	"
조병훈	"	성동구	지방토목지원
박병원	"	중구	기계지원

22-18

제 1372 호 시

일 1987.8.20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격 급
서 원 규 엄 창 훈	동 작 구 한강관리사업소	영동로구 마포구	지방거제기원 지방전기원보

◎ 1987 년 8 월 24 일 자

령 제 259 호

성 명	발 명 사 항	발령요청	발령 직 급	비고
유 창 현	한강관리사업소	1 호봉	지방전기원시보 ( 8 등급 )	신 규
유 확 규	"	3 "	"	
오 종 산	"	5 "	"	
김 경 태	"	1 "	"	
오 경 승	"	3 "	"	
김 동 태	"	3 "	"	
송 여 배	대원산배수지	3 "	"	
양 호 섭	한강관리사업소	1 "	"	
여 창 열	"	3 "	"	
전 도 석	"	3 "	"	
권 영 태	"	3 "	"	
성 태 진	"	3 "	"	
점 성 수	"	3 "	"	
감 지 식	"	2 "	"	
이 총 국	"	1 "	"	
변 인 수	"	3 "	"	
정 춘 명	"	3 "	"	
송 신 호	"	2 "	"	
박 명 수	"	4 "	"	
김 창 수	"	4 "	"	
이 상 호	"	1 "	"	
안 중 영	"	3 "	"	
정 관 식	"	3 "	"	
이 병 우	"	3 "	"	
황 병 역	"	3 "	"	
김 재 규	"	5 "	"	

성명	발령사항	발령호수	발령직급	비고
이철호	한강관리사업소	2호	지방관리원서보(8등급)	신규
이재영	"	3	"	
김종원	"	6	"	
최동철	"	2	"	
유선현	"	7	"	
최문영	"	3	"	
김용환	"	1	"	
강선영	"	3	"	
오기영	용관구 한강관리사업소	3	"	
최기영	"	3	"	
최정인	"	3	지방기재원서보(8등급)	
구진희	"	1	"	
김현수	"	3	"	
허광석	"	1	"	
원두용	"	1	"	
최종수	"	3	"	
이갑년	"	3	"	
이정복	"	2	"	
이인숙	"	3	"	
최상룡	"	3	"	
박관순	"	3	"	
김정희	"	2	"	
김관희	차량정비사업소	1	"	
김영희	한강관리사업소	2	"	
김복경	"	4	"	
노수용	내무부 총무과	3	"	
윤희상	"	2	"	
조길수	한강관리사업소	3	"	
이영범	"	2	"	

성명	발령사항	발령호봉	발령직급	비고
배성철	한강관리사업소	3호봉	지방기계원서보 (8등급)	새규
홍순정	"	3 "	"	
이윤재	"	1 "	"	
서갑영	"	3 "	"	
황호경	"	1 "	"	
김동길	"	4 "	"	
김원택	"	2 "	"	
손재우	"	1 "	"	
김상동	"	2 "	"	
김채성	"	3 "	"	
문정근	"	2 "	"	
이종근	"	2 "	"	
김동선	"	3 "	"	
유지운	"	1 "	"	
이승호	"	3 "	"	
한성현	"	4 "	"	
이영호	"	3 "	"	
이성락	"	3 "	"	
이현호	차량정비사업소	1 "	"	
강순길	한강관리사업소	4 "	지방기계원 (8등급)	
김한기	"	3 "	지방기계원서보 (8등급)	
최석준	"	3 "	"	
윤태수	"	3 "	"	
장병천	"	2 "	"	
이명우	"	2 "	"	
유동희	"	3 "	"	
강병홍	"	3 "	"	
김석현	"	3 "	"	
방대연	내무부 총무과	2 "	"	
김철희	한강관리사업소	1 "	"	
문인기	"	1 "	"	

성명	발령사항	발령호동	발령직급	비고		
김동용	한강문화사업소	1호봉	지방기계거원시보(8등급)	신규		
최영조	"	3 "	"	"		
김석정	"	2 "	"	"		
◎ 1987년 8월 20일자 <span style="float: right;">명제 260 호</span>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진호	대동명경호실 파견근무물 명함 ( '87.8.20-'88.8.19 )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 1987년 8월 17일자 <span style="float: right;">명제 261 호</span>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현식	새마을중앙본부 파견 ( '87.8.17-'88.6.30 )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 1987년 8월 20일자 <span style="float: right;">명제 262 호</span>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학철	문화담당관 파견 ( '87.8.20-'87.12.31 )	강남국	지방건축기사보			
◎ 1987년 8월 20일자 <span style="float: right;">명제 264 호</span>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성원	원예 의하여 그림을 면함	의견과	지방행정서기보			
공무해외여행 명령						
여행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목적	여행국	기간	정비
내무국	새마을사업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봉현	일본 자연보호사업 비교 시찰	일본	'87.8. 20-8. 29:10 일간)	시비

특권 명칭								
순	식	급	성명	공제기간	준비기간	취득기간	준원비용	비고
상위	지	보통	조명성	인	1973. 7	1983. 11. 9	4,587.65	
하위	가		오오사카	사				
			시					
			하루					
			국					

서울특별시